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3월 4일
- 회부일자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2020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충북인재양성재단 추가 출연금 지원: 675백만원
- 「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」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

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

- ▶ 기 간: 2020. 4월 ~ 12월
- ▶ 사업대상: 일반계 고등학교(53교)
- ▶ 사 업 량: 7~9개교 내외(공모사업)
- ▶ 지원규모: 1교당 최대 1.5억원
- ▶ 사 업 비: 최대 13.5억원(도비 6.75, 시군비 6.75)
- ▶ 지원내용: 진로·진학지도 등 5개항목
 - ① 진로·진학지도, ② 학생수준별 맞춤형 수업, ③ 수시대비 특화 교과과정 운영, ④수능특강, ⑤교원역량 강화
- ▶ 5개항목 범위에서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·응모
- ▶ 교과과정 운영비, 외부강사료, 진로·진학 지도 경비 등 지원

5. 검토의견

-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당초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원금 손실 방지 및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26백만원과, 수도권 대학과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수혜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월정부담금 일부(224백만원)를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음.
-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“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”을 계획안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.
- 위 사업은 충북 미래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할 인재 양성과 충북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진로지도, 학력향상 등에 의지가 있는 학교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7~9개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·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- 법적근거
 -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,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및 제4조, 충북인재양성재단 정관 제5조(사업) 5항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.

□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5.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
□ **충북인재양성재단 정관 제5조(사업) 5항**

제5조(사업)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.

5.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위임·위탁하는 사업

-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,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본 사업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.
- 다만,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, 사전에 교육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.
- 또한,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의 실적저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, 재단에서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사업 추진 전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단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우수 인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충북의 미래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재 발굴이라는 본연의 사업목적 달성이 수 있다면 본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